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자립지원 실효성 제고〉
■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758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주거 자립지원 실효성 제고	3
※ 참고자료	1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남근의원 등 23인
2. 제 안 일 : 2025. 4. 11.
3. 회 부 일 : 2025. 4.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지원시설”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자립지원은 청소년 한부모가 먼저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담당자가 그 주거를 방문하며 통해 생활·교육·취업 등의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들 대부분은 퇴소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퇴소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자립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자립 지원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8조에서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마련 등 주거 자립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청소년 한부모를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8).

Ⅲ. 검토의견

1.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주거 자립지원 실효성 제고

개정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자립지원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지원 신청 등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7조의8(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자립지원)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자립지원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청소년 한부모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②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

현행	개정안
	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현행법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출산지원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임신·출산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에 한정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가. 제4조제1호의 모
나.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
다.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
 2. 양육지원시설: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생활지원시설: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4. 일시지원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부와 아동, 모 또는 부에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입소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설치·운영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출산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 ⑥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운영 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자격 기준, 그 밖에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소년 한부모가 해당 시설에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우선 입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²⁾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우선 분양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³⁾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 ⁴⁾, 제17조의2제1항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2. 우선공급

공공주택사업자는 일반공급의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공급비율 범위 내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구분	공급비율	입주자격
나.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20퍼센트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1)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사.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0퍼센트 범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말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의

· [별표 5의2] 5)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한다. 다만,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이어야 한다)을 충족하는 자(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가) 제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나) 제2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있는 신혼부부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3) 한부모가족 다) 제3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 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 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이하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2. 우선공급

가.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호에 따른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급하는 주택의 60퍼센트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나목1)부터 10)까지의 구분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청년, 예비신혼부부 또는 소년·소녀가정의 경우에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으며,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구분	공급비율	입주자격
4) 다자녀 가구 등	9퍼센트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나)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가) 2명 이상의 자녀(미성년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사람 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있는 사람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8) 청년	5퍼센트 범위	무주택자로서 <u>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u> 가)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주택)6)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음.

그런데, 청소년 한부모가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지원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거지원 정책의 효과에 한계가 있음.

개정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해당 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

		(2)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다) 혼인 중이 아닐 것
9)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	8퍼센트 범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4)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일 것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를 말한다)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한부모를 대리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주거지원센터 등에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주거 자립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먼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청소년 한부모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제17조의8제1항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⁷⁾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⁸⁾시 입주자 모집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모집하되,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⁹⁾

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이하 “입주자모집공고”라 한다)를 할 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내용(제5항의 경우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 ② 사업주체(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제50조 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포함한다)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지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9) 실무상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위임장 서식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토지주택공사(SH) 등 일부 지방공사는 온라인 청약시스템을 운영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계한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 모집 현황(2022년~2025년 1월)¹⁰⁾을 보면, 총 공급신청 신청인 중 인터넷 접수자가 대부분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인터넷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넷상 본인인증절차¹¹⁾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인터넷상 본인인증절차는 타인의 개인정보 악용을 방지하면서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10)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 모집 현황(2022년~2025년 1월말)>

(단위: 신청인 수, %)

연번	사업명	공공임대주택 유형	공급세대수	모집기간	인터넷	방문접수	총신청인 수
1	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	통합공공임대주택	605	'22.02.15. -02.18.	17,936 (93.3)	1,282 (6.7)	19,218 (100)
2	남양주별내 A1-1BL	통합공공임대주택	575	'22.02.15. -02.18.	11,888 (93.9)	777 (6.1)	12,665 (100)
3	행정중심복합도시 6-3UR1BL	통합공공임대주택	200	'24.04.11. -04.15.	181 (100)	- -	181 (100)
4	행정중심복합도시 6-3UR2BL	통합공공임대주택	216	'24.04.11. -04.15.	1,348 (99.6)	6 (0.4)	1,354 (100)
5	과주운정3 A24	국민임대주택	806	'24.05.20. -05.24.	1,510 (86.6)	233 (13.4)	1,743 (100)
6	인천검단 AA35-2	국민임대주택	593	'24.06.25. -06.28.	1,627 (96.3)	62 (3.7)	1,689 (100)
7	행정중심복합도시 6-3M4BL	통합공공임대주택	159	'24.08.09. -08.13.	181 (100)	- -	181 (100)
8	서귀포대정	통합공공임대주택	37	'24.09.11. -09.12.	605 (98.4)	10 (1.6)	615 (100)
9	평택고덕 국제화계획 A-58	국민임대주택	378	'25.01.13. -01.17.	2,899 (96.7)	100 (3.3)	2,999 (100)

주1: 가장 최근 국민임대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신규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한정하였음.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11) 본인인증절차는 인터넷상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가 실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구체적으로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본인인증절차를 포함하여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인터넷상 본인인증절차는 청소년 한부모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접수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본인인증절차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 절차 전부를 대리하여 수행하기보다는 신청과정을 지원(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 시행령 제22조¹²⁾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지원과 관련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당사자의 사전동의서 등을 받아 청약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임¹³⁾.

한편,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청소년 한부모 당사자의 의사존중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을 고려할 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공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법 제3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5. 법 제18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사무

13)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실무적으로는, 청소년 한부모가 시설 퇴소시에는 퇴소 후 주거 계획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공동생활가정형(LH매입임대) 주거지원 희망 시 우선 입소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공임대주택 공급 신청 등을 대리함에 있어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8¹⁴⁾의 입주자 자격 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에게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거나 필요하면 대통령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겠음.

다음,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복지 관련 지원업무 의뢰에 관한 개정안 제17조의8제2항과 관련하여,

개정안 제17조의8제2항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법」”이라 함) 제17조에 따른 주거지원센터의 장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에

14)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8(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세대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 등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자로서 입주자 자격이 확인된 자에게 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공급 가능한 주택 현황, 입주 대기 순서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의 운영 및 정보 제공 등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31.] [시행일: 2025. 8. 1.]

다른 주거복지센터의 장애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거약자법」¹⁵⁾은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지원센터는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주거기본법」 제22조¹⁶⁾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관련 정

15)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7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 주택의 확인,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2.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3.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센터를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6)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보제공 및 상담, 주거실태조사 지원,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개정안은 청소년 한부모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거와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 관련 지원시설과 연계시켜 청소년 한부모의 안정적인 주거자립을 지원하려는 취지이나,

주거지원센터는 주거약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거복지센터는 센터 이용자를 제한하고 있는 기준이 없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의의가 없어도 해당 요건을 갖춘 청소년 한부모가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실익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여성가족부가 지침 등을 통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주거지원센터 및 주거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위치 등과 관련한 정보를 청소년 한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주거약자법」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거지원센터를 지원업무 의뢰기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고,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문제,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지원하면 개정 취지를 달성 가능하다는 입장임.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제17조의8제1항에 대하여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현재도 현장방문 접수 시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춘 경우에는 제3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대리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접수의 경우 본인인증절차를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안 제17조의8제1항은 개정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개정안 제17조의8제2항에 대하여는 주거약자법은 고령자, 장애인, 장애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근거 법률이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 한부모는 주거약자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거약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에서 청소년 한부모에게 주거문제·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주거지원센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¹⁷⁾을 제시함.

관계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정안 제8조의6제1항에 대하여 현재 현장방문 접수 시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등을 구비하면 제3자 대리신청이 가능하여 개정실익이 적고, 보호시설의 장의 대리청약 시 피해자 본인의 최종 청약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17) 국토교통부는 실제로 주거복지센터와 주거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함.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는 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개정안의 내용에 찬성하면서도, 개정안이 청소년 한부모 본인 의사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안되며, 실효성 담보를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행정 및 인력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649

【참고자료】 청소년 한부모 주거지원 관련 사업 추진현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사업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시 상담치료, 출산전·후 의료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등 자녀양육과 자립 지원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①출산지원시설 입소, ②인구감소지역 전 시설 및 ③위기임산부 입소 가능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 산	5,495	5,516	4,457	5,245	5,846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전체 예산

- LH 매입임대주택 활용하여 청소년한부모 등 미혼모·부 입주지원(1순위)

	예산 (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2년	1,003	시·도 별 사업운영기관(16개)	총 245호 운영, 임대보증금 최대 80만원 지원
'23년	997	시·도 별 사업운영기관(16개)	총 266호 운영, 임대보증금 최대 90만원 지원
'24년	1,962	시·도 별 사업운영기관(18개)	총 306호 운영, 임대보증금 최대 1백만원 지원

* 담당인력 : 시·군·구 지자체 공무원, 매입임대 주거지원 운영기관 담당자